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30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이훈기·김용만·송재봉

문진석 · 신장식 · 박지원

김정호 • 박지혜 • 용혜인

송옥주 · 정동영 · 노종면

이재관 • 박홍근 • 최형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 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 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 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 이 적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콘텐츠에 한정한다)"를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①・②	제18조(콘텐츠의 공급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③		
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			
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	1		
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		
<u>사업자</u> 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사업자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			
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한정	콘텐츠(종합유선방		
<u>한다)</u>	<u>송</u> 사업자의 경우 「방송법 <u>」</u>		
	제70조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		
	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